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1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배준영 · 한지아 · 최수진
김승수 · 임이자 · 김미애
이상휘 · 최은석 · 성일종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7원.”을 “2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전력량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u>0.7원</u> .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u>0.6원으로 한다</u> .	3. ----- ----- <u>2원 <단서 삭제></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⑤ ----- ----- ----- ----- ----- -----. <u><단서 삭제></u>